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8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서민우 의원 외 9인(이신자,박정환,박왕규,김귀화,안대국,김화덕,홍복조,이영빈,박재형)
- 발의일자: 2020. 9. 29.
- 회부일자: 2020. 10. 16.
-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10. 28.)

2. 제정이유

- 달서구 관내 지역 중 역사·문화적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,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의 거리 지정, 조성계획의 수립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문화예술 행사,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기능, 운영, 제척·회피(안 제6조~안 제9조)
- 라.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(안 제10조)
- 마. 홍보(안 제11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- 현재 대구광역시 「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」를 기반으로 관할 구·군과 협력하여 대구시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‘문화도시’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.
 - 이에 호응하여 현재 수성구(「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」)와 중구(「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) 경우, 그들 지역의 문화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.
- 동 조례안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만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살린 문화 거리(또는 문화도시)를 조성하는 점에 부응하여 달서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동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, 제정안 각 조문 내용을 살펴볼 때도 특별히 논란이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 - 특히 달서구는 최근 수년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‘선사시대로(路) 조성 사업’을 해 왔으나 여전히 의회로부터 “~확고한 정체성도 구축하지 못해 성과가 미흡”하다는 지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, 동 선사시대로(路)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○○로(路) 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동 조례안이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일정 수준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, 본 조례 제정이 오히려 때 늦은 점도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6. 토론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공연”을 “공연시설”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조 례 안	개 정 안
제3조(조성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3조(조성계획의 수립) ① (조례안과 같음)
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조례안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	3. ----- -----
가. 문화예술 <u>공연</u> , 전시시설, 경관 조명 등	가. ----- <u>공연시설</u> ----- -----
나. ~ 라. (생략)	나. ~ 라. (조례안과 같음)
4. ~ 6. (생략)	4. ~ 6. (조례안과 같음)